



# Standard Oil 판결과 미국 Antitrust Law의 형성

홍명수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1. Sherman법의 제정과 초기 경쟁규범

최초의 성문화된 경쟁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는 Sherman법 제정 당시의 주요 특징으로서, 인위적 독점의 거부, common law의 전통에 기초한 사고, 일반조항적인 규정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Sherman법 제정 이후 초기에는 동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보통법 (common law)적인 사고와 관점이 지속되었으며, 경쟁규범의 고유한 법리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제안이유에는 Sherman법이 새로운 규범이 아니라 보통법 하에서도 다루어진 문제들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할을 창설함으로써 보통법을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며,<sup>1)</sup> 연방법원의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원리가 아닌 종래의 해석방법으로서 보통법적 접근방식이 유지되었다.<sup>2)</sup> 이러한 결과로 보통법 원칙의 연장선에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 즉 제3자에 대한 강요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인상의 약정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 카르텔이 사실상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시장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 등이<sup>3)</sup> Sherman법 해석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보통법적 해석의 수용은 Sherman법의 적용범위의 축소와도 관련되는데, 예

1) 이에 관하여 당시 Sherman법 제정을 지지하였던 Hoar 의원과 Edmunds 의원은 Sherman법의 제정이 보통법의 오래된 원칙을 확인한 것이며, 독점은 이미 보통법에도 수용된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라고 하였다. Phillip Areeda & Louis Kaplow, Antitrust Analysis, Little, Brown & Company, 1988, 50면.

2) Herbert Hovenkamp,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West Group, 1999, 52면.

3) 위의 책, 55면. 한편 보통법에 있어서 거래제한은 당해 제한이 시간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부수적인 (ancillary) 경우에 합리적인 것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 Phillip Areeda & Louis Kaplow, 주 1)의 책, 47면.

를 들어 셔먼법 시행 후 최초의 판례인 U.S. v. E. C. Knigh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설탕 제조가 설탕 거래에 선행할지라도 설탕 거래의 일부는 아니므로 제조에 관한 합의가 셔먼법 제1조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sup>4)</sup> Sherman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sup>5)</sup>

그러나 점차적으로 Sherman법의 고유한 의의가 확립되었으며,<sup>6)</sup> 특히 이하에서 살펴볼 1911년의 Standard Oil Co. 판결은 Sherman법의 경쟁정책적 의의를 확고히 하여 이후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 2. Standard Oil 판결의 내용

### 1) 석유산업과 Standard Oil Co.의 형성과정

1850년 이전에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제 생산방식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1850년에서 1860년에 이르는 십년간은 미국 역사상 산업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된 시기에 해당한다.<sup>7)</sup> 바로 이 시기에 석유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용도가 밝혀지기 시작하였으며, 1859년 Edwin Drake는 Pennsylvania주에서 최초로 산업적인 방식에 의한 석유시초에 성공한다.<sup>8)</sup> 이후 석유의 산업에너지원으로서의 특성이 계발되면서 석유의 생산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5년 내에 600여개 이상의 석유회사가 설립되었다.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석유 가격은 대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석유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 불황의 원인이 된다.<sup>9)</sup>

4) U.S. v. E. C. Knight, 156 U.S. 1(1895), 12면.

5)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Understanding Antitrust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2. ed., Matthew Bender, 1994, 6면.

6) Hovenkamp는 보통법과 Sherman법의 준별의 기준으로서, 거래제한에 있어서 보통법 하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손해배상의 청구와 형벌의 부과가 가능해진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거래제한에 있어서의 계약 원칙을 사법 영역에서 공법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Herbert Hovenkamp, 주 2)의 책, 51-52면.

7) Ernest L. Bogart & Donald L. Kemmerer, Economic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Longmans, Green & Co., 1951, 466면 이하.

8) 종래 자연약품으로서 알려져 있던 석유는 Bissell과 Silliman에 의하여 등화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밝혀졌고, Drake에 의하여 기계굴착방식에 의한 석유획득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Charles A. Beard & Mary R. Beard, The Rise of American Civilization, Macmillan, 1927, 179면.

9) 위의 책, 179-180면.



최초의 불황이 도래했던 이 시기에 John D. Rockefeller도 Cleveland에 있는 한 정유소에 출자함으로써, 석유산업에 진출하였다. 3년 후에 그는 그 정유소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1868년에는 'Stand Oil'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Standard Oil은 1870년에 Ohio주에서 법인화되어 Standard Oil Company가 되었으며, 설립당시에 이미 Standard Oil Co.는 미국 정유시장의 10%를 차지함으로써 동 산업의 최대기업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sup>10)</sup>

이후 Standard Oil Co.는 결합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은 수평적인 확장과 원유산업과 판매망의 전후방을 연계하는 수직적인 구조의 구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1872년에 이르러 Standard Oil Co.는 클리블랜드 지역에 있는 정유소 26개 중 20개를 결합시켰고,<sup>11)</sup> 이어서 결합과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전 미국으로 확장하여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973년 Chess, Carley & Company의 지분 50% 획득, 1974년 Atlantic Refining과 결합, 1975년 Acme Oil Company 및 Camden Consolidated Oil Company와 결합, 1977년 The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 및 Baltimore United Oil Company이 설립, 1978년 Waters-Pierce Oil Company 및 Consolidated Tank Line Company와 결합, 1979년 Vacuum Oil Company와 결합,<sup>12)</sup> 1980년 Imperial Oil of Canada의 설립, 1981년 송유관을 담당하는 National Transit Company 설립<sup>13)</sup> 그리고 1982년에는 쿠바와 카리브에서 정제업무를 수행할 West India Oil Company와 해외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할

10) 당시 Standard Oil Co.는 Ohio주 Cleveland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은 철도교통의 요지로서 비용상의 이점을 제공하였고, 이는 Standard Oil Co.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Glenn Porter, 손영호·연동원 편역, 미국 기업사, 학문사, 1998, 123면.

11) Standard Oil Co.는 최대 정유제조업자로서 대량수송의 이점을 살려 철도회사들로부터 큰 폭의 할인을 받았으며, 이로써 비용상의 문제를 갖게 된 경쟁업자들을 압박해 나갔다. Charles A. Beard & Mary R. Beard, *The Rise of American Civilization*, Macmillan, 1927, 183면. 또한 Standard Oil Co.와 철도회사들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 Standard Oil Co.의 수평적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에, Elizabeth Granitz & Benjamin Klein, "Monopolization by Raising Rivals' Costs": The Standard Oil Cas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96, 1면 이하, 43-45면 참조.

12) 한편 이 해에 Standard Oil Trust 외부에 있던 중요한 기업인 Pacific Coast Oil Company는 The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를 인수하나, Pacific Coast Oil Company는 결국 1900년 Standard Oil 트러스트 산하에 들어오게 된다.

13) National Transit Company의 설립은 원유를 철도에 의지하지 않고, 송유관에 의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그 정착을 의미한다. 이후 Standard Oil Trust의 원유운송에 있어서의 지배적 지위는 확고하게 되었다. Arthur Menzies Johns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Petroleum Pipelines: A Study in Private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1862-1906,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1956, 100면 이하 및 Elizabeth Granitz & Benjamin Klein, 주 11)의 글, 35-36면.

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을 설립하였고,<sup>14)</sup> 이 해에 Standard Oil Co.를 중심으로 한 트러스트를 결성하면서, 그 중심업무를 수행할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를 설립하였다.<sup>15)</sup> 이로써 Standard Oil 트러스트는 원유생산부터 송유, 정유 및 판매를 포괄하면서 전 미국 정유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거대한 독점기업체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서 대부분의 경쟁기업은 흡수되거나 소멸하였다.<sup>16)</sup>

이후에도 Standard Oil 트러스트는 사업의 확장과 트러스트 내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비록 국내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었지만, 1879년 Novel Interests가 러시아 유전을 개발하고 1890년 Royal-Dutch Co.가 인도네시아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유럽의 석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경쟁은 격화되었다.<sup>17)</sup> 따라서 전체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고, 통제도 점점 더 강화되었다.<sup>18)</sup> 1888년 New Jersey주의 회사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Standard Oil 트러스트도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1890년 Sherman법이 제정된 이후 1892년 Standard Oil 트러스트는 공식적으로 해산하였고,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sup>19)</sup> 1898년을 기준으로 Standard Oil 그룹은 미국 전체 정유량의 83.7%를 공급하였고, 대부분의 송유관을 지배하였으며, 사업범위는 천연가스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나갔다.<sup>20)</sup> 20세기에 들어서 석유산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Texas주에서의 유전의 발견은 석유산업의 구조 자체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Texas 유전에 근거한 Texaco Inc., Gulf Oil Co. 등이 신흥 석유기업으로서 등장하게 된다.<sup>21)</sup> 그러나 Standard Oil 그

14) Economides & Oligney가 '대학살'이라고 표현한 이 확대과정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1874년까지 Pittsburgh의 정유소 21곳 중 20개를 흡수하거나 폐쇄시켰고, 1877년까지 Philadelphia, Titusville, Baltimore에 있는 모든 정유소를 흡수하였다. Michael Economides & Ronald Oligney, 강대은 역, *The Color of Oil*, 산해, 2000, 54면 참조

15) 트러스트의 본사를 New Jersey주로 옮기게 된 데는 New Jersey주 회사법상의 편리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

16) Glenn Porter, 주 10)의 책, 125면 및 Elizabeth Granitz & Benjamin Klein, 주 11)의 글, 18면 이하 참조.

17) Glenn Porter, 위의 책, 126면.

18) 한편 이 시기에 이미 Standard Oil에 관료주의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에, Michael Economides & Ronald Oligney, 주 14)의 책, 55면.

19) 1890년 Ohio주에서 주 법무장관 David K. Watson에 의하여 주 최고법원에 Sherman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Standard Oil 트러스트의 해산이 청구되었으며, 실제로 Ohio 최고법원은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미 본사를 New Jersey로 옮겨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Standard Oil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Charles A. Beard & Mary R. Beard, 주 11)의 책, 190-191면.

20) Mary B. Norton et al., *A People and A Natio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 II*, Houghton Mifflin Co., 1986, 489면.

21) Texas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Spindletop 유전은 굴착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도 유명하였지만, 그 산유량도 막대하였는데, 이 단일 유전의 하루 생산량은 Pennsylvania주 전체의 원유생산량에 필적하였다. 이 발견



그룹은 여전히 석유산업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sup>22)</sup> 1911년 연방대법원이 Sherman법 위반을 판결할 당시에는 New Jersey에 있는 본사를 포함한 34개의 기업이 결합되어 있었다.

## 2) Standard Oil Co.에 대한 반독점 판결과 해체<sup>23)</sup>

1906년 미국 연방정부는 Standard Oil을 구성하는 34개의 기업을<sup>24)</sup> 석유의 거래와 통상을 제한하고 석유산업을 독점화하려 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Sherman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다. 연방대법원에서 피고는, Standard Oil Co.의 성장은 우월한 효율성의 귀결이며,<sup>25)</sup> 실제로 Standard Oil Co.가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기간 동안 석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미국은 거대기업에 의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에 기초한 반론을 전개하였다.<sup>26)</sup> 연방대법원은 40여년에 걸친 Standard Oil 그룹의 성장과정을 검토한 끝에, 피고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정상적인 방식(normal methods of industrial development)에 의해서가 아니라 트러스트, 지주회사 등 인위적인 방식의 결합에 의하여 일용(prima facie)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업자를 거래에서 배제하고 석유의 유통을 통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을 계기로 하여 Texas주 등의 석유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 남부는 석유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석유산업 구조 자체를 민주화시키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에, Lawrence Goodwyn, Texas Oil, American Dreams, Texas State Historical Association, 1996, 9면 이하 참조. 한편 이 시기에 미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석유탐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업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Gerald D. Nash, United States Oil Policy 1890-1964, Greenwood Press, Publishers, 1968, 20-22면.

22) 한편 20세기 들어서 Standard Oil 그룹의 정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906년에 70%, 1911년에 64%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Harold F. Williamson et al., The American Petroleum Industry, Northwestern Univ. Press, 1963, 7면.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석유산업에서 Standard Oil 그룹의 지배력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분석에 관하여, Elizabeth Granitz & Benjamin Klein, 주 11)의 글, 39면.

23) 연방정부에 의한 제소가 있기 전까지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에, 각 주에서 Standard Oil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20개의 제소가 있었다.

24) 피고에는 이를 기업들 외에 John D. and William Rockefeller 외에 다섯 명의 개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25) Standard Oil Co.의 우월한 효율성에서 성장의 근거를 찾는 견해와 이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또한 운송의 측면에서 Standard Oil Co.가 다른 기업에 대하여 우월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한 반론에 관하여, Elizabeth Granitz & Benjamin Klein, 주 11)의 글, 40면 이하 참조.

26) 예를 들어 피고측의 변호사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힘이 Standard Oil과 같은 기업구조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William E. Kovacic, ‘Designing Antitrust Remedies for Dominant Firm Misconduct’, Connecticut Law Review vol. 31, 1999, 1296-1298면 참조.

비추어 피고의 행위는 Sherman법 제1조와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6개월의 기간 안에 지주회사를 통한 결합을 주식양도의 방식으로 해체하고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직·간접의 결합을 재형성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sup>27)</sup>

### 3) 경쟁법상의 쟁점

이와 같이 Standard Oil 그룹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호한 것이었지만, 그 판단과정이 자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동 판결은 Sherman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있던 종래의 입장으로부터의 전환이었던 만큼, 많은 논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또한 독점금지법상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Standard Oil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의 수용일 것이다. 즉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불합리한(unreasonable) 제한만이 독점금지법상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이전 Addyston Pipe 판결에서<sup>28)</sup> 부수적인(ancillary) 거래제한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던 '합리성의 원칙'을 직접적인(direct) 거래제한에까지 확장한 것이며, 이로써 동 원칙은 Sherman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인 법리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sup>29)</sup> 또한 비록 Standard Oil 판결이 동 원칙에 기초하여 반독점 판단으로 귀결되었다 하더라도, 동 원칙은 그 함의로써 Sherman법상 위법하지 않은 거래제한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물론 Standard Oil 판결을 통하여 제시된 '합리성의 원칙'은 그 내용과 범위의 구체화가 결여된 원칙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후의 논의의 전개과정에<sup>30)</sup> 기초가 될 수 있는 선결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독점금지법의 규범체계의 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는 Sherman법의 운용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범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법원이 Sherman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성을 반경쟁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의회 입법원칙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1)</sup> 이에 관하여 법원의 의견을 대표한 주심 White 대법관을 포함한 8

27)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31 S.Ct. 502, 502-504 (1911).

28) U. S. v. Addyston Pipe & Steel Co., 175 U.S. 211 (1899).

29)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주 5)의 책, 83-83면 참조.

30) 이러한 구체화로서의 중요한 진전은 Chicago Board of Trade 사건에서 이루어졌다(Chicago Board of Trade v. U.S., 246 U.S. 231 (1918)). 또한 Phillip Areeda & Louis Kaplow, 주 1)의 책, 204-208면 참조.

31) 이에 관하여 Harlan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서, 법해석 기준으로서의 'unreasonable'의 제시는 법원이 스스로 금지해왔던 사법부에 의한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221



인은, Sherman법 제1조와 제2조의 일반조항적인 규정들이 사법부에게 주어진 사건에서 특정한 행위들에 대한 동 법의 비난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법부의 입법적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sup>32)</sup>

한편 이 판결 이후에도 Sherman법상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인 제1조와 독점에 관한 규정인 제2조의 체계적인 이해는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즉 동 판결은 Standard Oil 그룹의 행위가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기서 두 조항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하여 Sullivan & Harrison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Sherman법 제2조를 제1조에 대하여 보충적인 것으로, 즉 제1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제2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제2조의 정확한 의의에 대한 확정은 추후의 판례에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동 판결은 기업간의 결합이 합리성의 원칙하에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독점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는 1914년 제정된 Clayton법 제7조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sup>34)</sup>

끝으로 구체적인 해체조치에 있어서 법원은 Sherman법 제4조에 근거하여<sup>35)</sup> Sherman법 위반행위를 해소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를 지주회사로 한 그룹을 각 개별기업으로 분리하고 이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Sherman법의 목적이 재산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protect, not destroy) 것에 있다”고<sup>36)</sup> 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법원은 이러한 고려하에서 해체조치가 기본적으로 유상적인 주식 반환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즉 6개월 이내에 지주회사인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 및 자회사 자신에게 그들이 지주회사에 대하여 대가적으로 갖고 있었던 권리와 상환으로 양도하며, 이러한 상환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권리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sup>37)</sup> 그 외에 자회사가 갖고 있던 자산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예를 들어

U.S. 1, 82 (1911); 31 S.Ct. 502, 524 (1911).

32)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221 U.S. 1, 64 (1911); 31 S.Ct. 502, 517 (1911).

33) E. Thomas Sullivan & Jeffrey L. Harrison, 주 5)의 책, 208면.

34) 위의 책, 271-273

35) Sherman법 제4조 제1문은 “The several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re invested with jurisdiction to prevent and restrain violation of sections 1 to 7 of this title”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6)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221 U.S. 1, 78 (1911); 31 S.Ct. 502, 523 (1911).

법원은 Standard Oil 그룹에 의하여 사용되는 모든 유조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Union Tank Line Company에 대하여, 유조차량의 분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 것이 공중에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동 회사의 주주나 회사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결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sup>38)</sup>

### 3. 해체 이후의 석유산업의 구조변화

Standard Oil 그룹의 해체 이후, 석유산업은 치열한 경쟁구조로 급속하게 재편되었다. 새로운 상황에서 Standard Oil 그룹에 속했던 많은 기업이 퇴출되었지만, 몇몇 기업은 석유산업에서의 유력한 기업의 위치를 유지해 나갔다. Standard Oil 그룹에 속했던 기업 중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을 보면, 지주회사였던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1926년 Exxon Co.로 회사명칭을 변경),<sup>39)</sup>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1961년 Standard Oil Co. of Kentucky를 합병하고 1984년 Texas 지역의 유전개발에 의하여 신흥기업으로 성장하였던 Gulf Oil Co.를 합병하면서, Chevron Co.로 회사명칭을 변경) 그리고 다른 광 산업 부문과 정유 이외의 기타 석유화학제품 분야로 확장한 Continental Co. 등이다.

이들의 성장에는 Standard Oil 그룹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이전된 측면도 있었지만, 성장의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 새롭게 재편된 경쟁적인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Standard Oil Co.는 미국 석유산업의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지만,<sup>40)</sup> Standard Oil Co.가 해체된 이후 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에 혼란이 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 석유산업은 확대되었고, 이는 세계 석유산업에서 미국 석유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41)</sup> 또한 Standard Oil Co.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각 개별기업들의 자산가치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법원의 판결 이후 Standard Oil에 속했던 개별기업들의 주식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sup>42)</sup>

37)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221 U.S. 1, 77-80 (1911); 31 S.Ct. 502, 523-524 (1911).

38) Standard Oil Co. of New Jersey v. U. S., 221 U.S. 1, 80 (1911); 31 S.Ct. 502, 524 (1911).

39) Standard Oil Co. of New York과 Vacuum Co.(두 기업은 1931년 합병한 후에 1966년 Mobil Co.로 회사명칭을 변경), Exxon Co.와 Mobil Co.는 1999년 합병하여 Exxon-Mobil Co.가 되었으며, 이는 현재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다.

40) William E. Kovacic, 주 26)의 글, 1296-1298면.

41) Harold F. Williamson et al., 주 22)의 책, 15면 이하 참조.

42) Standard Oil 그룹에 속했던 기업들의 주식은 해체 1년 후에 평균적으로 47%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법원의 판결에 의한 Standard Oil Co.의 해체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반독점적인 기업에 대한 강제적 분리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규범체계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선구적 판례에 해당한다. 또한 판결 이후의 석유산업의 발전과정은 개별기업의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 전체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Standard Oil Co.의 해체 이후 재결합 과정이 계속되면서 석유산업의 구조는 과정화 되었으며, 과거 Standard Oil에 속했던 Exxon-Mobil Co.나 Chevron Co. 등의 주도적 위치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적인 시장구조는 과거 Standard Oil Co.에 의하여 독점화되었던 시장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Standard Oil Co.의 해체의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sup>43)</sup>

## 4. Standard Oil 판결의 경쟁정책적 의의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Standard Oil Co.의 해체는 반독점정책이 적극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선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범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Standard Oil Co.의 해체는 독점금지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법리적으로는 거래제한 및 자연적인 성장이 아닌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독점의 금지에 기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비상기구나 특별한 절차가 아닌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사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업해체의 방식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분하게 고려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Standard Oil Co.의 해체는 모두 주식 양도에 의하여 자주회사의 관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위는 존중되었으며, 해체 이후의 분석에 의하면 이들의 재산적 가치는 오히려 증대하였다.

Standard Oil Co.의 해체 이후 당해 산업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이들 기업을 해체한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자회사들은 독립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들의 참가에 의하여 산업구조는 종래 독점적인 구조에서 경쟁적인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석유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제고되었다. Jeffrey

---

Dow Jones 지수가 7.6% 상승한 것에 비하여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4년 후에 동 기업들의 주식가치는 4배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William E. Kovacic, 주 26)의 글, 1299면.

43) William E. Kovacic, 주 26)의 글, 1300면 이하 참조.

Spears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정황은 당해 산업 자체를 해체의 진정한 승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44)</sup> 그러나 법원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독점적 기업을 해체한 것만으로 이러한 결과가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견해는 여전히 음미할 만한 것이다.<sup>45)</sup> Kovacic는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 요인으로서, 해체된 당시 자회사들이 이미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의 조직과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는 점, 해체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신생 독립 회사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였다는 점 그리고 석유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상용화 등으로 당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46)</sup> Moschel의 분석에 따르면, Standard Oil Co.의 해체 이후 산업구조의 긍정적인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구조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sup>47)</sup> 분리된 자회사들은 각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들은 전체 시장에서 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Kovacic의 지적은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고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정착하고자 할 경우에, 해체 이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에 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쟁저널**

44) Jeffrey L. Spears, "Arguments for and against Legislative Attacks on Downstream Vertical Integration in the Oil Industry", Kentucky Law Journal vol. 80, 1992, 1077면 이하 참조.

45) 한편 독점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실질적 해체의 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Richard A. Posner, *Antitrust Law: An Economic Perspective*, Univ. of Chicago Press, 1976, 84면 참조.

46) William E. Kovacic, 주 26)의 글, 1301-1302면.

47) Wernhard Moschel, *Entflechtung im Recht der Wettbewerbsbeschränkungen*, J. C. B. Mohr, 1979, 71면. 또한 1917년에 이르러 석유산업은 독점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과점적인 구조 하에 기업들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에, Gerald D. Nash, 주 21)의 책, 1면.